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10. 22.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 10월 10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2년 10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2회의회(입사회) 제2차위원회(92.10.2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산업과장 김 영 찬)

가. 제안이유

1992년 6월 25일 가스계 신설과 1992년 9월 15일 가스계장 보직발령에 따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기금출납공무원을 현행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안 제5조제2항)
- 제9조제1항의 조문정리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건 재)

마포구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가스계 신설과 가스계장의 보직 발령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9조제1항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홍길표 위원) : 연료계와 가스계의 담당업무는?
- 답변요지(양석용 시민국장) : 연료계는 연탄·석유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가스계는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함.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기존 연료계의 직원을 1~2명 정도 증원해서 담당해도 되지 않은가?
- 답변요지(양석용 시민국장) : 행정직보다는 화공적인 가스계장이 가스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더

효율적임.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2년 월 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을 두고 있으며 1992년 6월 25일 가스계 신설과 1992년 9월 15일 가스계장 보직발령에 따라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90호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조문 미정리 조항에 대하여 조문 정리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기금의 출납을 위한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 개정
 - 기금출납공무원을 현행 연료계장에서 가스계장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
- 제9조 제1항의 조문정리(안 제9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원본-별첨 1

4. 관계규칙 발책서-별첨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스계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가 기금을 용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u>연료계장</u> 으로 한다.	② _____ _____ <u>가스계장</u> _____
제9조(음자신청절차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u>음자대상자</u> 가 기금을 <u>음자받고자</u> 할 경우에는 <u>구청장</u> 에게 기금음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6조의 _____ _____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1992. 10. 2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 10. 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2. 10. 16.
- 다. 상정일자 : 제12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10.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영목재무과장)

- 가.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당초 '93년도에 취득 승인된 컴퓨터(386DX) 16대를 내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금년도에 13대를 구매하

고, 주민전산망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93년에 17대를 구매하고자 함

-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은, 당초 소형승합차(뉴콤비디럭스) 1대를 구매 승인받았으나 내무부의 '92년도 공공부문에산절감 및 에너지 대책과 관련한 지방관용차량 운영개선지침에 의해 소형승용차(핵셀 1.3L)로 변경 구매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현 기)

본건은 기승인된 정수물품 취득계획을 사정변경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386DX 컴퓨터의 경우 16대를 '93년도 예산에 반영, 확보키 위해 제11회 임시회시 승인했었음. 그러나 정부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지시에 따라 금년도에 13대를 취득키 위한 것으로서, 이는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됨. 구의회사무국 차량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소형승합차를 소형승용차로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운동현위원) : 컴퓨터 16대를 내년도에 구매토록 승인한지 한달도 안되서 변경 요청하는 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닌가
- 답변요지(김진택기획예산과장) : 인구 17천명이상의 동은 금년내에 컴퓨터를 확보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금년에 대통령선거 업무를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현재 설치된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여 변경하게 되었음
- 질의요지(윤정용위원) : 구매하는 386DX 컴퓨터의 조작요원은 확보되었나
- 답변요지(김진택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자체교육계획으로 200명정도를 연말까지 교육예정으로 진행중이며 컴퓨터 구입 즉시 특별교육을 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음
- 질의요지(김유현위원) : 본건의 컴퓨터를 구입 사용하면 사무자동화는 어느 정